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5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백선희 · 황운하 · 서왕진
강경숙 · 정춘생 · 권향엽
박희승 · 이주희 · 김재원
이해민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

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로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u></p>	<p>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 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 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u> ----- -----.</p>